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86
----------	-----

2023년 5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 상정일자 :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4월 2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취·창업 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및 복지서비

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자양동)
- 규모 : 대지 3,312㎡, 건물 7,406㎡(지상 4층 ~ 지하 2층)
- 시설현황 : 강의실, 컴퓨터실, 실습교육실(조리, 제과·제빵, 피부, 헤어, 의상 등), 강당, 상담실, 창업보육센터 등
 - ※ 여성창업플라자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14 도곡역사 내 대합실 지하 2,3층(임대시설, 743.2㎡, 보육실 15개)
- 인력현황 : 14명
 - 센터장 1명, 관리팀 4명, 교육팀 6명, 취·창업팀 3명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운영 및 관리
 -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 여성의 창업을 위한 공간·정보·상담 제공 등 여성창업자 지원사업
-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 위탁유형: 시설위탁

○ 위탁기간: 3년(2023. 10. 1. ~ 2026. 9. 30.)

○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모집(재위탁)

○ 소요예산: 금1,735백만원(2023년 예산)

- 인건비 646백만원, 운영비 944백만원, 시설물유지관리비 95백만원, 특화교육 프로그램 50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3. 3. 17.)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여성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요하는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며

- 여성인재양성 및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 취·창업 지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의2호에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4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3년 제1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적정)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 여성능력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조정·평가 및 지원
3.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창업 촉진 사업 추진
4.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여성능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제4조의3제1항¹⁾에 따라 재위탁²⁾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동부여성발전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 여성의 창업을 위한 공간·정보·상담 제공 등 여성창업자 지원사업
 -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 여성발전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제45조제2항³⁾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29조⁴⁾,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5, 2021.12.30>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양성평등기본법」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⁵⁾ 등에 따라 여성의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시설로 현재 권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까지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붙임1 참고】

- 금번 동의안의 대상이 되는 동부여성발전센터는 2002년 9월 개관하여 2005년 11월 ‘동부여성플라자’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7년 7월부터 ‘여성능력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2014년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여성능력개발원과 분리하여 독립 운영되고 있음.

〈민간위탁 추진현황〉

- `02.5. ~ `14.9. 여성가족재단 운영
 - ※ `05.11. 동부여성플라자(명칭변경) → `07.7. 여성능력개발원(명칭변경)
 - `14.10. 조직개편 통해 여성능력개발원과 동부여성발전센터로 분리
- `14.10. ~ 민간위탁
 - 제1회차 공개모집 `14.10.~`17.9.(3년, (사)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 `14.06. 시의회 동의
 - 제2회차 공개모집 `17.10.~`20.9.(3년, (사)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 제3회차 공개모집 `20.10.~`23.9.(3년, (사)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 `20.06. 시의회 동의
- `23.2.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시의회 동의(`23.4. 예정)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5)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주요사항 검토

가. 동의안의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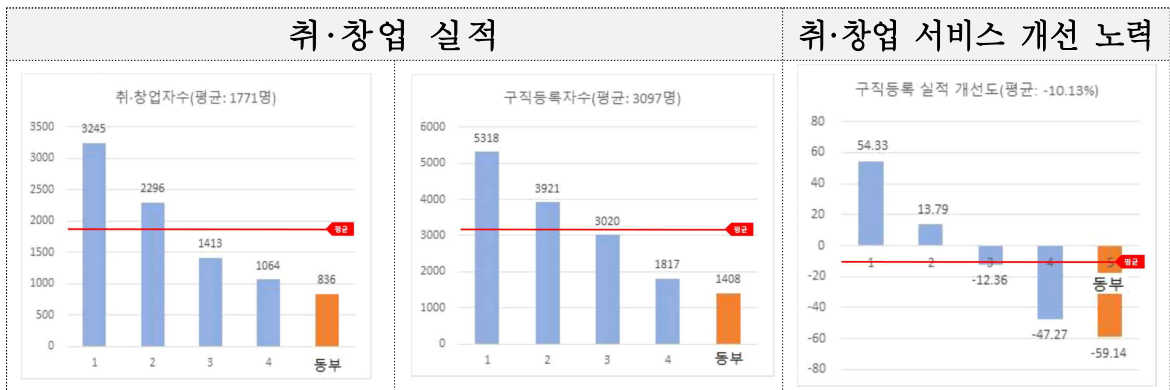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제2항6)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7)에서 ‘여성관련시설의 운영 등은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 「민간위탁조례」 제4조8) 및 제6조9) 등에서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여성 대상 취·창업 교육, 취업 알선 및 창업 지원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여성발전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 6)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7)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의2호에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9)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동의안의 주요내용

- 「민간위탁조례」제4조의3제3항¹⁰⁾ 및 제18조¹¹⁾에 따르면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2022년 여성발전센터 운영평가¹²⁾ 결과, 동부센터는 전체 센터 중 4순위로 B등급을 받았으며 취·창업자 수, 구직등록자 수, 구직 등록 실적 개선도 등이 평균 이하로 여성인력기관으로서의 고유 영역인 일자리창출 사업실적에서 부진한 성과를 보였음.

※ 동부여성발전센터 일자리창출 사업실적 평가 결과



- 여성발전센터의 운영평가지 일자리창출 사업실적 외에 기관운영실적이나 조직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센터의

- 10)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1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1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여성능력개발원 :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평가·조정·지원 등의 총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설치·운영 목적이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인 점을 고려하여 재위탁 시 여성발전센터 본연의 업무인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취업률 제고에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

다. 민간위탁 필요성

-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운영은 여성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이 필요한 바, 해당 사무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3 종합 의견

- 금번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은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등 그 사무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고려할 때,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2022년 여성발전센터 운영평가 결과 동부여성발전센터가 낮은 실적을 보인 취·창업자 수, 구직등록자 수 등이 개선되어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취업률 제고 등 여성발전센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재위탁 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 선정이 필요해 보임.

<붙임>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운영 현황

구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위치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자양동)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신월동)	금천구 독산로 50길 23 (시흥동)	노원구 동일로 207길50 (중계동)	마포구 토정로 35길 17 (용강동)
규모	대지3,312㎡ 건물7,406㎡	대지1,551㎡ 건물3,472㎡	대지15,067㎡ 건물 5,786㎡	대지4,959㎡ 건물4,910㎡	대지2,010㎡ 건물3,871㎡
설립	'02. 5. 1.	'97.12.03.	'79.10.26.	'89. 9. 8.	'86.12.16.
명칭	동부여성발전센터 →동부여성플라자 (’05.11) →여능원(’7.07) →동부여성발전센 터(’14.10)	서부여성 발전센터	구로부녀복지관 →남부여성발전 센터(’96.9)	노원부녀복지관 →북부여성발전 센터(’96.9)	마포복지관 →중부여성발전 센터(’96.9)
운영 방식	민간위탁	직영 ↓ 민간위탁(’99.07)	직영 ↓ 민간위탁(’04.05)	직영 ↓ 민간위탁(’04.05)	직영 ↓ 민간위탁(’03.10)
위탁 법인 (대표)	(사)여성이 만드는일과미래 (이인자)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법인 (장만희)	(사)서울여성 노동자회 (신상아)	(사)한국여학사 협회 (오민화)	행복중심생협 연합회 (안인숙)
위탁 기간	'20.10.01.~ '23.09.30.	'21.03.01.~ '24.02.29.	'22.05.01.~ '25.04.30.	'22.05.01.~ '25.04.30.	'21.10.15.~ '24.10.14.
인력	14명 창플(2명)포함	11명	12명	12명	11명
'23년 예산*	1,735백만원	1,105백만원	1,205백만원	1,225백만원	1,042백만원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686
----------	-----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취·창업 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나.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운영
- 나. 위탁유형 : 시설위탁
- 다. 위탁기간 : 3년(2023. 10. 1. ~ 2026. 9. 30.)
-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추진 필요성

- 여성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사무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며
- 여성인재양성 및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 취·창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마. 위탁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 및 관리

-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 여성의 창업을 위한 공간·정보·상담 제공 등 여성창업자 지원사업
-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바.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자양동)
- 규 모 : 대지 3,312㎡, 건물 7,406㎡(지상 4층 ~ 지하 2층)
- 시설현황 : 강의실, 컴퓨터실, 실습교육실(조리, 제과·제빵, 피부, 헤어, 의상 등), 강당, 상담실, 창업보육센터 등
- ※ 여성창업플라자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14 도곡역사 내 대합실 지하 2,3층(임대시설, 743.2㎡, 보육실 15개)
- 인력현황 : 14명
- 센터장 1명, 관리팀 4명, 교육팀 6명, 취·창업팀 3명

○ 위치도



사.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아. 소요예산 : 금1,735백만원(2023년 예산)

- 인건비 646백만원, 운영비 944백만원, 시설물유지관리비 95백만원, 특화교육 프로그램 50백만원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3. 3. 1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의2호에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4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종합성과평가는 별도평가(여성능력개발원 주관)로 대체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 여성능력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조정·평가 및 지원
3.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창업 촉진 사업 추진
4.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여성능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 작성자 : 양성평등담당관 양성평등일자리팀 구성모(☎ 2133-5019)